

# 토고 (Togo)

## ◎ 주요 변동사항

구 분	2017	2019	비 고
적용대상	근로자, 자영자	근로자, 자영자	-
보험료율	16.5%(노4/사12.5)	16.5%(노4/사12.5)	-
노령연금 수급 요건	가입기간 15년, 60세	가입기간 15년, 60세	-
노령연금 지급률(40년 기준)	53.25%	53.25%	-
일시금	최종 5년 월평균소득 × 가입기간(연)	최종 5년 월평균소득 × 가입기간(연)	-

## 1 근거법 제정 시기

- 최초법 : 1968년
- 현행법 : 2011년(사회보장)

## 2 제도형태

- 사회보험제도

## 3 적용대상

- 당연적용 : 근로자(공적 부문 임금근로자, 농업 임금근로자, 가사근로자 포함), 자영자, 비정규 부문 근로자
- 임의가입 : 연속적으로 6개월 이상의 가입기간이 있고 최종 12개월 동안 강제 가입 이력이 있는 자
- 적용제외 : 견습생 및 학생
- 특별제도 : 공무원 및 군인

## 4 재원조달

- 가입자 : 월 적용소득의 4%
  - 임의가입자는 최종 3개월간의 월 평균 적용소득의 16.5%
 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하한소득 : 법정 최저임금

- 법정 최저 임금 : 35,000 CFA francs
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상한소득 기준 없음
  
- 자영자 : 월 적용 신고 소득의 16.5%
  - 비정규 부문 근로자는 자영자로서 납부
 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하한소득 : 법정 최저임금
    - 법정 최저 임금 : 35,000 CFA francs
 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상한소득 기준 없음
  
- 사용자 : 월 적용 임금의 12.5%
 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하한소득 : 법정 최저임금
    - 법정 최저 임금 : 35,000 CFA francs
 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상한소득 기준 없음
  
- 정부 : 없음
  - 특별제도에 가입되지 않은 공적 부문 임금근로자의 사용자로서 보험료 납부

## 5 급여종류별 수급요건

- 노령연금
  - 가입기간 15년 이상, 60세 (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조로(早老)인 경우 55세)
  - 조기연금 : 가입기간 15년 이상, 55세
  - 고용은 중지되어야만 함
  - 상호협정이 있는 경우, 급여의 국외지급 가능
- 노령일시금 :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15년 미만, 60세
  - 고용은 중지되어야만 함
  
- 장애연금
  - 정상퇴직연령 미만, 소득능력을 66% 이상 상실 판정
  - 장애발생 전년도에 6개월 가입기간을 포함하여 가입기간이 120개월 이상
  - 가입자는 국가사회보장기금이 위탁·지정한 의사에 의해 의료검진을 받아야 할 수도 있음
  - 상시간호보조금 : 가입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타인의 상시간호가 필요한 경우 지급
  - 상호협정이 있는 경우, 장애연금의 국외지급 가능
- 장애일시금 : 정상퇴직연령 미만이고, 소득능력 66% 이상 상실 판정받았으나, 장애연금 수급 요건이 없는 경우 지급
  
- 유족연금
  - 사망자가 노령 또는 장애연금을 수급 중이었거나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또는 가입기간이 180개월 이상인 경우 지급

- 수급 가능 유족
  - 사망자와 1년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했거나, 사망자와의 사이에 자녀가 있거나, 사망 당시 자녀를 임신 중이었던 40세 이상 유족배우자
  - 16세 이하 피부양 자녀(학생이나 장애인 경우 21세)
  - 유족 배우자가 40세 미만인 경우 일시금이 지급될 수 있음
- 유족 배우자연금은 재혼 시 정지됨
- 유족연금을 수급 중인 고아에게는 가족수당을 동시 지급하지 않음
- 상호협정이 있는 경우, 유족연금 국외지급 가능
- 유족일시금 : 사망자의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 180개월 미만으로 사망자가 노령 또는 장애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
  - 수급 가능 유족은 유족배우자 및 유족배우자가 없는 경우 고아를 포함함
  - 수급가능 유족은 가족수당에 추가하여 유족일시금 수급 가능

## 6 급여종류별 지급액

### □ 노령급여

- 노령연금
  - 가입자의 최종 5년간 월 평균소득의 20%에 180개월 초과 보험료 납부기간 12개월 당 소득의 1.33%씩 가산하여 지급
  - 월 최저 노령연금액은 법정 월 최저임금(35,000 CFA francs)의 60%
  - 월 최대 노령연금액은 퇴직 전 최종 5년간 가입자 월 평균소득의 80%
  - 가입자에게 2개 이상의 연금수급권이 발생한 경우, 높은 연금에 다른 연금(들)의 50%를 더하여 지급
  - 조기연금 : 정상퇴직연령보다 일찍 청구한 1년당 5%씩 노령연금액 감액
  - 급여조정 : 급여는 해당 제도의 자원, 임금, 생계비의 변동에 기초하여 시행령으로 조정
- 노령일시금 : 최종 5년간 가입자 월 평균소득에 가입기간 12개월 당 수를 곱하여 일시금으로 지급

### □ 장애급여

- 장애연금
  - 최종 5년간 가입자 월 평균소득의 20%에 180개월 초과 보험료 납부기간 12개월 당 월 평균소득의 1.33%씩 가산하여 지급
  - 월 최저 장애연금액은 법정 월 최저임금(35,000 CFA francs)의 60%
  - 월 최대 장애연금액은 장애 전 최종 5년간 가입자 월 평균소득의 80%
  - 상시간호수당 : 장애연금액의 50% 지급
  - 장애연금은 정상퇴직연령 도달시 중지되고 동일한 금액의 노령연금으로 대체됨
  - 가입자는 산업재해 보상제도에 따른 장애급여도 수급 가능. 총 수령액은 산재보상제도에 의한 장애연금액 100%에 이 금액을 초과하는 비산재 장애연금 부분을 가산한 금액을 수급

- 급여조정 : 급여는 해당 제도의 자원, 임금, 생계비의 변동에 기초하여 시행령으로 조정
- 장애일시금 : 가입기간이 180개월이었다면 가입자가 수급할 수 있었던 연간 장애연금의 3배를 일시금으로 지급
- 가입자의 가입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, 연간 장애연금 총액은 전체 가입기간의 월 평균소득을 사용하여 산정됨

## □ 유족급여

- 유족연금
  - 배우자연금
    - 사망자가 수급 중이었거나 수급 요건을 충족했던 노령 또는 장애연금의 50%를 수급가능 배우자에게 지급
    - 유족배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유족연금 균분 지급
    - 40세 미만 유족배우자에게는 사망자의 연금 4년분을 일시금으로 지급
  - 고아연금
    - 사망자가 수급 중이었거나 수급 요건을 충족했던 노령 또는 장애연금의 25%(완전 고아인 경우 40%)를 각 고아에게 지급
    - 고아연금액은 가족 수당액 이상이어야 함
  - 유족연금 총액은 사망자가 수급 중이었거나 수급 요건을 충족했던 노령 또는 장애 연금의 100%를 초과할 수 없음
  - 유족은 산업재해 보상제도에 따른 유족급여도 수급 가능. 총 수령액은 산재보상제도에 의한 유족연금액에 이 금액을 초과하는 비산재 유족연금 부분을 가산한 금액을 수급
- 유족일시금
  - 가입기간 6개월 당, 가입기간 180개월 충족시 가입자가 수급할 수 있었던 노령 또는 장애연금액 1개월분씩 산정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
  - 유족배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균분 지급

## 7 관리운영기관

- 노동고용행정개혁부(Ministry of Labor, Employment and Administrative Reform)
  - 전반적 감독
  - <https://fonctionpublique.gouv.tg/>
- 국가사회보장기금(National Social Security Fund)
  - 노.사.정 위원회와 총장의 관리 하에 제도 운영 및 보험료 징수
  - <https://cnss.tg/>

<2019년 ISSA 자료>